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승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61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3.

발의자 : 백승주 · 이종명 · 홍문종
윤한홍 · 장석춘 · 강석진
최교일 · 박완수 · 염동열
김한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은 육·해·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 법인 「사관학교 설치법」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육군3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,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.

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교과과정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교과과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 이어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